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화하는 외교환경을 반영하여 기존 연구부를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인도태평양연구부, 북미유럽연구부, 전략지역연구부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여 개편하고, 연구부의 산하에 연구분야의 기능에 맞는 연구센터를 배치하여, 연구부와 연구센터간 유기적인 연계를 확대하고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10. ~ 8.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및 구성) ①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 국제안보 통일연구부,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인도태평양연구부, 북미유럽연구부 및 전략지역연구부를 둔다.

② 각 연구부는 연구부장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연구부 밑에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내규로 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소관업무) ① 국제안보통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2. 남북한 관계 및 통일외교에 관한 조사·연구
3. 한반도 안보, 지역안보 및 국제안보에 관한 조사·연구
4. 기타 국제안보 및 통일 관련 사항

②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경제, 통상, 금융, 무역 환경 및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2. 경제안보 및 경제규범 등에 대한 조사·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양자 및 다자외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국제경제기구 및 주요 경제협력체 관련 사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5. 기타 제1호에 규정된 분야, 과학기술 및 지경학 문제에 관한 사항

③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기구, 다자외교 및 관련 글로벌거버넌스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2.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간 국제법 관련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3. 개발협력 및 공공외교에 관한 조사·연구
4. 기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외교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5. 기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분야와 관련된 사항

④ 인도태평양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북아·동남아·서남아 및 대양주 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 국가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연구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5. 기타 제1호에 규정된 지역과 관련된 사항

⑤ 북미유럽연구부는 다음 사항 등을 분장한다.

1. 북미, 유럽, 러시아 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 국가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안보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연구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안보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5. 기타 제1호에 규정된 지역과 관련된 사항

⑥ 전략지역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프리카·중동지역, 중남미, 중앙아시아, 태평양도서 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 국가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연구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5. 기타 제1호에 규정된 지역과 관련된 사항

제4조제1항 중 “조사·연구업무를”을 “조사·연구업무 및 연구센터의 운영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수·부교수·조교수”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로 한다.

제5조 중 “같은 연구부장으로는 한”을 “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명칭 및 구성) ①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 안보통일연구부, 아시아·태평양연구부, 미주연구부, 유럽·러시아연구부, 경제·통상·개발연구부 및 아프리카·중동연구부를 둔다. ②각 연구부는 연구부장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명칭 및 구성) ①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인도태평양연구부, 북미유럽연구부 및 전략지역연구부를 둔다. ② 각 연구부는 연구부장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연구부 밑에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내규로 정한다.
제3조(소관업무) ①안보통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2. 남·북한 관계 및 통일외교에 관한 조사·연구 3. 한반도 안보 및 동북아 평화체제에 관한 조사·연구 3의2. 지역안보 및 국제안보에 관한 조사·연구 4. 기타 안보통일문제 관련사항	제3조(소관업무) ① 국제안보통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2. 남북한 관계 및 통일외교에 관한 조사·연구 3. 한반도 안보, 지역안보 및 국제안보에 관한 조사·연구 4. 기타 국제안보 및 통일 관련사항

②아시아·태평양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북아·동남아·서남아 및 대양주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연구

2. 우리나라와 동북아·동남아·서남아·대양주지역 국가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3. 기타 동북아·동남아·서남아·대양주지역 국가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관련 사항

③미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미 및 중남미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2. 우리나라와 북미 및 중남미지역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3. 기타 북미 및 중남미지역 국가 관련사항

②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경제, 통상, 금융, 무역 환경 및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2. 경제안보 및 경제규범 등에 대한 조사·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양자 및 다자외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국제경제기구 및 주요 경제협력체 관련 사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5. 기타 제1호에 규정된 분야, 과학기술 및 지정학 문제에 관한 사항

③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기구, 다자외교 및 관련 글로벌거버넌스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2.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간 국제법 관련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3. 개발협력 및 공공외교에 관

④유럽·러시아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럽·러시아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2. 우리나라와 유럽·러시아지역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3. 기타 유럽·러시아지역 국가 관련사항

⑤ 삭제

⑥경제·통상·개발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간 경제·통상·국제개발협력, 금융문제 및 일반 국제기구 관련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2. 국제통상·무역기구 및 국제금융기구, 국제개발협력 및 일반 국제기구에 관한 조사·연구

3. 기타 국제경제·통상·국제개발협력 및 일반 국제기구 관련사항

⑦아프리카·중동연구부는 다

한 조사·연구

4. 기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외교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5. 기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분야와 관련된 사항

④ 인도태평양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북아·동남아·서남아 및 대양주 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 국가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연구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5. 기타 제1호에 규정된 지역과 관련된 사항

을 사항을 분장한다.

1. 아프리카·중동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2.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중동
지역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3. 그 밖에 아프리카·중동지역
국가 관련 사항

⑤ 북미유럽연구부는 다음 사항
등을 분장한다.

1. 북미, 유럽, 러시아 지역 국가
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 국가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조
사·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
협력체, 안보협력체 및 경제협
력체에 관한 조사·연구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
협력체, 안보협력체 및 경제협
력체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5. 기타 제1호에 규정된 지역과
관련된 사항

⑥ 전략지역연구부는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아프리카·중동지역, 중남미,
중앙아시아, 태평양도서 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
에 관한 조사·연구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 국가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조
사·연구

제4조(연구부장등의 직무) ①연구 부장은 해당연구부의 소관분야에 대한 <u>조사·연구업무를</u> 지휘·감독한다. ②<u>교수·부교수·조교수</u> 및 연구원은 연구부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연구부에 부여된 정책과제와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u>조사·연구업무를</u> 수행한다.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같은 연구부장으로는 한</u>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 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에 관한 <u>조사·연구</u>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 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u>조사·연구</u> 5. 기타 제1호에 규정된 지역과 관련된 사항 제4조(연구부장등의 직무) ①--- ----- ----- <u>조사·연구업무 및 연구 센터의 운영을</u> ----- -----. ②<u>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u> ----- ----- ----- ----- -----.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 ----- <u>한</u> ----- ----- -----.
--	---